
 교육부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12. 6.(월) 배포</p>			
보도일	2021. 12. 7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12. 7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 이후 보도 가능				
담당과	평생학습정책과	담당자	과 장 사무관	이해진 한영진	(☎ 044-203-6345) (☎ 044-203-6381)

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

◆ 평생교육이용권 우선발급 신청자의 요건 규정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수당수급자, 장애인연금수급자, 한부모가족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사람

◆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 마련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을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2월 7일(화), 국무회의에서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 -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「평생교육법」 개정(2021.12.9. 시행)에 따른 후속 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,
 - ‘한국판 뉴딜2.0 교육분야 과제’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.
-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)을 정하여,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.

-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,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·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
 - 「평생교육법」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,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,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.
 - 그 외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,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였다.
- 한편,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(바우처) 지원예산의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,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(바우처) 발급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.

※ 평생교육 이용권(바우처) 예산 : (2021) 74억 원 → (2022안) 141억 원(+67억 원)

- 지원인원 및 단가 : (2021) 15,000명 x 연35만 원 → (2022 안) 30,000명 x 연35만 원

- 우수이용자(전체 이용자의 20%)로 선정 시 35만 원 추가 제공(총 70만 원)

- 내년 1월 중 평생교육이용권(바우처)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,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 명에게 이용권(바우처)를 발급할 예정이다.
-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(약 1,700여 개소)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.

【평생교육이용권(바우처) 지원사업 개요】

-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이용권(바우처)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, 지원규모 매년 확대 중
- 한국판 뉴딜 2.0에도 포함, 2022년 예산규모를 대폭(2배) 확대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하며,
 - “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

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) ① <u>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(이하 “도시협의회”라 한다)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·군·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특별자치시,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자치구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조의2(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)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</u>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도시협의회”는 “<u>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</u>”로, “평생학습도시”는 “<u>장애인 평생학습도시</u>”로 본다.</p> <p><u>제7조의3(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</u>를 위한 협의회)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(이하 “<u>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</u>”라 한다)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</p>

제7조의2(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) 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(이하 “평생교육이용권”이라

둔다.

②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
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관련 기관의 장

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제7조의4(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)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.

한다)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3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
4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으려면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애에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

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3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5.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

사업을 위하여 진흥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,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,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“가족관계 증명·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.

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⑤ -----
----- 발급
및 사용 관리 ----- 교육
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5(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 기관의 지정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(이하 “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시·도평생

교육진흥원

2.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

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

2.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

3.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4.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의6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1. 회수의 경우: 회수 사유, 회수 기한, 회수 방법 등
2. 환수의 경우: 환수 사유, 환수 금액, 납부 기한, 납부 기관, 납부 방법 등

제7조의7(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)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
2.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

제7조의8(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

의 구축·운영)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
2.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
3.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
4.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
5.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
6.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
7.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

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.

1. 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
2. 정보의 최신성·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

제8조(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) ① 진
흥원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
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
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
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2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
록)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
비”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
·설비를 말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5조(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
요건)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
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자격요건을 갖춘 자”란 별표 1의
2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
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
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
아니한 자를 말한다.

제16조(평생교육사의 등급 등) ①
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
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2와 같
다.

제76조의2(지도·감독) (생략)

제8조(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) ① 법
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
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
다)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
록) ① -----
----- 별표 1
의2-----
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
요건) -----

----- 별표 1의3-----

-----.

제16조(평생교육사의 등급 등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별표 1의3과 ----.

제76조의2(지도·감독) ① (현행 제
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<신 설>

제7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삭제

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2. (생략)

③ (생략)

<신 설>

②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7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
② -----

--.

1.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

2.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3. 4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7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
 교육부장관(제77조에 따라 교육부
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
 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
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
 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
 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
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~ 8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
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
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
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
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
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
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
수 있다.

제77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

 -----.

1.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
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
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
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
관한 사무

3. ~ 10. (현행 제1호부터 제8호
 까지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생교
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
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
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
에 관한 사무를 -----

 -----.